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가단2000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윤성배

원고승계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윤성배

피 고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고준원, 이지원

변 론 종 결 2023. 7. 19.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F과 피고 C 사이에 2020. 7.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F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7. 20. 접수 제52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D는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7. 20. 접수 제52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F과 피고 E 사이의 2020. 7. 1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F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20. 7. 20. 접수 제10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소송의 목적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다음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신청을 하자 소송탈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승낙이 없어 소송탈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서 모두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 양자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2. 3. 1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채무자 F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4903 사건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23. 3. 17. 위 채권양도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23. 3. 14.자 승계참가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위 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F의 일반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F의 일반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2023. 5. 17. 3차 변론기일에서 소송탈퇴를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기일에 피고들이 모두 불출석하였고 원고의 소송탈퇴에 대해 피고들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소송탈퇴의 경우 동의간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당사자로서 이 사건 소송에 그대로 남아 있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보전채권

가) 주식회사 G는 F을 상대로 대구 수성구 H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4903호), 2012. 4. 26. F에게 43,437,939원 및 2012. 6. 30.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위약금 등 채권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

2) 주식회사 G는 이후 파산을 신청하였고, 위 회사의 파산관재인 I은 2020. 6.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20. 6. 9. 원고에게 F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2020. 6. 22. F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2020. 6. 23.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2. 3. 1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의 내용이 포함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2023. 3. 14.자 승계참가신청서가 2023. 3.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2020. 7. 15. 기준으로 113,295,665원이고, 2022. 11. 9. 기준으로 133,431,827원이다.

2) 처분행위

가) 피고 C은 F의 배우자이고, 피고 D는 F의 아버지, 피고 E은 F의 동생이다. 나) F은 2020. 7. 15.

피고 C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2142분의 165.92 지분임) 및 본래 자신이 보유한 2,142분의 165.03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 C은 2020. 7. 20.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524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F은 2020. 7. 15. 피고 E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 E은 2020. 7. 2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F에 대한 2021. 8. 10.자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F은 J은행에 1,240,000원 가량의 예금채권, K증권에 예수금

110,592원 및 유가증권잔고평가금 2,829,470원, L주식회사 암보험 해약환급금 1,748,588원의 채권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F이 같은 날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C과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증여 또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과 피고 E, 전득자인 피고 D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정상적인 거래행위였고 선의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각 처분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F과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과 F과 피고 E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인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익자인 피고 C은 F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7. 20. 접수 제524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전득자인 피고 D는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7. 20. 접수 제52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익자인 피고 E은 F에게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20. 7. 20. 접수

제10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경

별지

목 록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 2,142㎡ 중 2,142분의 165.92 지분

2. 경상북도 청도군

전 1,339㎡.끝.

